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가단14496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A

2.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2. 9.

주 문

1. 피고들과 C 사이에 포천시 D 답 6,643.6㎡ 중 지분 11분의 2에 관하여 2021. 4. 2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들은 C에게 포천시 D 답 6,643.6㎡ 중 각 지분 11분의 1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판사 임윤한

별지

청 구 원 인

1. 기초 사실관계

가. 당사자간의 지위

원고는 현재 소외 채납자 C (이하 '채납자'라 합니다)에 대하여 491,240,910원의 국세채권을 가진 채권자이고, 피고 A는 채납자의 동생이며, 피고 B는 채납자의 매제입니다. 채납자의 어머니인 소외 망(亡) F의 상속인으로는 피고 A, 대습상속인으로 소외 망(亡) G의 배우자 소외 B, 채납자, 소외 H, 소외 I, 망(亡) G의 자녀 소외 J, K (이하 '이 사건 상속인들'이라 합니다)이 있습니다(갑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

나. 과세경위

원고 산하 도봉세무서장(이하 '원고'라 합니다)은 채납자에게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249,810,300원을 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납자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가산금219,173,760원 포함 국세 491,240,91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 이라고 합니다)을 채납하고 있습니다(갑 제2호증 채납내역).

<표1> 채납자 C의 소 제기일 현재 국세 채납내역

(단위 : 원)

관할지	세목	귀속	납부기한	고지금액	채납액	납세의무 설정일
용산	부가가치세	2011	2011-10-25	10,638,000	15,833,810	2011-12-31
	부가가치세	2011	2012-03-31	11,103,560	19,431,060	2011-12-31
	부가가치세	2012	2012-05-04	10,803,000	931,330	2012-06-30
	기타경상이전수입	2012	2012-07-31	442,700	442,700	2012-06-30
	근로소득세(합)	2012	2012-09-30	3,780,010	3,964,970	2012-01-31
도봉	양도소득세	2008	2011-08-31	255,579,830	427,928,990	2008-12-31
	종합소득세	2008	2014-01-31	12,968,090	20,707,020	2008-12-31
	종합소득세	2011	2011-11-30	532,090	568,660	2011-11-31
	종합소득세	2011	2012-08-31	742,510	764,780	2011-12-31
	종합소득세	2012	2012-11-30	647,300	696,710	2012-12-31
합 계				307,247,080	491,240,910	

다. 채납자와 피고 A, B 사이의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

1) 채납자의 어머니 소외 F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2021.1.3. 사망하였습니다.

소외 망(亡) F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소외 H, 자녀들인 채납자, 소외 I, 피고 A와 망(亡) G의 배우자인 피고 B, 그 자녀들인 소외 J, 소외 K(이하 소외 H, 채납자, 소외 I, 피고 A, 피고 B, 소외 J, 소외 K를 “이 사건 상속인들”이라고 합니다.)이 있습니다. (갑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 참조).

2) 이 사건 상속인들은 2021. 4. 2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대해 피고들을 공동소유로 하는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21. 4. 27. 접수 제17893호로 A, B를 공동소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

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갑 제3호증 이 사건 부동산 등기부등본, 갑 제4호증 상속협의분할계약서).

2. 손해행위 취소청구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납자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 체결된 날은 2021. 4. 21. 인 반면, 위 <표1> 기재와 같이 채납자의 납세의무 성립일 및 채납건수 10건으로서 2021. 4. 21. 이전임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채납자에 대한 국세채권은 전술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있기 전부터 채납자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조세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이 명백합니다.

또한 국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채권액에 손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증가산금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므로(대법원 2007. 6. 27. 선고 2006다66753 판결), 가산금을 포함한 채납세액 전액이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나. 손해행위

1) 판례의 태도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채납자는 2021. 4. 21. 이 사건 상속인들과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체결하였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 권리를 각자 모두 포기함으로써, 피고들이 공동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게 하였습니다(갑 제3호증 이 사건 부동산 등기부등본, 갑 제4호증 상속협의분할계약서). 위 관례와 같이 채납자가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여 채납자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어, 원고의 강제징수 역시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다. 채납자의 무자력

채납자는 2021. 4. 21.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 당시 적극재산으로 58,268,309원(이 사건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은 국세채납액이 491,240,910원에 달하여 이미 무자력(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습니다.

<표2> 사해행위 당시 채납자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현황

내역	평가액	비고
경기 포천 L	31,693,909원	(재산평가액)×2/11 (갑 제6호증 기준시가액)
경기 포천 D (이 사건 부동산)	26,574,400원	(재산평가액)×2/11 (갑 제6호증 기준시가액)
적극재산 계	58,268,309원	
국세 채납액	491,240,910원	
소극재산 계	491,240,910원	
채무초과액	△432,972,601원	

위와 같이 채납자는 사해행위일인 2021. 4. 21.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자신의 상속분 58,268,309원을 포기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적극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초과상태를 더욱 심화시켰다고 할 것입니다.

라. 사해의사

채납자는 2021. 1. 3. 母 망 F의 사망으로 망인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법정상속분(11분의 2 지분) 만큼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음에도, 정상적으로 상속등기를 할 경우 재산에 대한 압류 등 원고의 채납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예상하고, 이를 면탈하고자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관하여 피고 A

□, B의 공동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사실이 분명하므로, 채납자는 위 사해행위 당시 조세채권자인 채권자를 해할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 피고의 악의

1) 판례의 태도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은 「사해행위취소법에 있어서 피고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이 채납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피고들은 채납자와 친족관계 또는 가족관계로서 이 사건 상속 재산협의분할계약 당시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채납자의 사해의사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바. 제척기간의 준수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은 2021. 4. 21. 체결되었으므로 아직까지 '법률행

위 있는 날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22. 2.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정취하여 검토함으로써 비로소 취소 원인을 알게 되었으므로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 또한 도과하지 아니 하였음이 분명합니다.

3. 원상회복의 방법

이 사건 부동산의 11분의 2지분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피고 명의로 바쳐진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여야 할 것이나,

① 대법원 2000.2.25 선고 99다53704 판결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도 적용시킬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점,

② 채납자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법률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라는 점,

③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추가적인 소유권이전등기절차(ㄷ F 에게서 채납자에게)를 거쳐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채납자에게 진정한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합니다.

4. 결론

위와 같이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은 채납자의 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와 채납자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채납자의 법정상속지분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변경 된 청구원인

1.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취지

가. 원고는 지난 2022. 11. 1.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한 바 있으나, 상속재산 분할협의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청구가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 이를 정정하기 위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내용 일부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2. 청구원인 정정 사항

가. 소장 제2면 “가.당사자간의 지위” 항목

○ 당초 소장에는 「원고는 현재 소외 채납자 C (이하 ‘채납자’라 합니다)에 대하여 491,240,910원의 국세채권을 가진 채권자이고, 피고 A 는 채납자의 동생이며, 피고 B 는 채납자의 매제입니다. 채납자의 어머니인 소외 망(亡) F 의 상속인으로는 피고 A , 대습상속인으로 소외 망(亡) G 의 배우자 소외 B , 채납자, 소외 H , 소외 I , 망(亡) G 의 자녀 소외 J , K (이하 ‘이 사건 상속인들’이라 합니다)이 있습니다(갑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현재 소외 채납자 C (이하 ‘채납자’라 합니다)에 대하여 491,240,910원의 국세채권을 가진 채권자이고, 피고 A 는 채납자의 동생이며,

피고 B는 채납자의 매제입니다.』로 정정하는 바입니다.

나. 소장 제8면 “3.원상회복의 방법” 항목

○ 당초 소장은 「이 사건 부동산의 11분의 2지분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피고 명의로 마쳐진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여야 할 것이나,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들 소유의 각 2분의 1 지분 중 각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각 피고들 명의로 마쳐진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여야 할 것이나.」로 정정합니다.

3. 결론

이와 같이 청구위지 및 청구원인을 정정하는 바입니다.

1) 이 사건 소장에 첨부된 별지에는 ‘경기도 포천시 E 답 6,643.6㎡’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주문 제1항과 같이 정정한다.